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2년 01월 26일 (목) 15:00 ~ 16:30	장 소	안양대학교 회의실
참석인원	박철우(위원장), 홍상기(학교), 이원규(학교) 윤상호(학생), 조혜인(학생), 이은진(학생) 박광석(전문가), 홍영삼(간사)	불참자	없음
안 건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른 심의 회의		
내 용	-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른 심의 회의. - 위원장 박철우 학생처장이 기획예산과의 2012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등록금 책정의 배경을 설명 요청 함. - 위원장 요청에 따라 홍상기 기획처장이 2012학년도 예산안 검토 후 운영비,관리비 등의 예산을 간축하여 등록금을 인하 방안을 제시 함. - 박광석 전문가 위원이 2012년도 예산안을 재차 검토하여 관리비, 운영비의 간축예산과 등록금 인하의 예산을 제시한 기획예산과의 제시에 동의 함. - 박철우 위원장이 국가시책과 학교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한 등록금 인하 안이므로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한 인하율에 동의하며 학생대표들의 수용여부를 물음. - 윤상호 학생대표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이 관리비, 운영비 외에 인건비 등을 좀 더 간축하면 더 큰 폭의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홍상기 위원이 관리비, 운영비는 자체적인 노력과 절약정책으로 간축이 가능한 부분이나 인건비는 1998년 이후로 계속적인 동결로 더 이상의 간축은 불가하여 부득불 등록금 인하율을 5%로 제시하였음을 피력. - 이원규 위원이 2012학년도 등록금 인하율은 학교와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으로 우리 학교실정에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윤상호 위원이 2012 예산안 중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의 동결임을 처음 안 사실임을 인지하고, 학교측에서의 자구노력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5% 인하 안에 동의 함 - 조혜인 위원과 이은진 위원이 제청함 - 나머지 의원 동의 제청 함. - 2012학년도 안양대학교 등록금은 2011학년도 기준 5% 인하하기로 하고 박철우 위원장이 폐회선언.		

위의 사실을 확인 함.

2012년 01월 26 일

위원장 : 박 철 우 (인)

위 원 : 윤 상 호 (인)

위 원 : 홍 상 기 (인)

위 원 : 조 혜 인 (인)

위 원 : 이 원 규 (인)

위 원 : 이 은 진 (인)

위 원 : 박 광 석 (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2년 01월 19일 (목) 17:00 ~ 18:00	장 소	안양대학교 회의실
참석인원	박철우(위원장), 홍상기(학교), 이원규(학교) 윤상호(학생), 조혜인(학생), 이은진(학생) 박광석(전문가), 홍영삼(간사)	불참자	없음

안 건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른 2차 회의

- 내 용
-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른 2차 회의.
 - 위원장 박철우 신임 학생처장이 기획예산과의 2012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등록금 책정의 배경을 설명 요청 함.
 - 위원장 요청에 따라 기획예산과 김수환 과장이 2012학년도 예산안 및 그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 설명
 - 윤상호 학생대표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이 동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제시하고 좀 더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인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 함.
 - 박광석 위원이 2012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의 세심한 검토와 그에 따른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
 - 이은진 학생대표 위원이 윤상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이 학교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함,
 - 홍상기 위원이 2012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 후 추후 회의 개최 의견을 제시
 - 조혜인 위원이 홍상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학교측의 세심한 검토 후 인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 학생대표 윤상호 총학생회장이 조혜인 위원의 의견에 제청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
 - 나머지 의원 동의 제청 함.
 - 추후 회의를 재차 개최하기로 하고 박철우 위원장이 폐회선언.

위의 사실을 확인 함.

2012년 01월 19일

위원장 : 박 철 우 (인)
 위 원 : 홍 상 기 (인)
 위 원 : 이 원 규 (인)
 위 원 : 박 광 석 (인)

위 원 : 윤 상 호 (인)
 위 원 : 조 혜 인 (인)
 위 원 : 이 은 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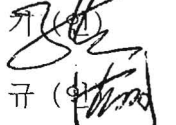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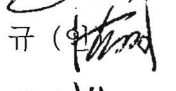
일 시	2012년 01월 09일 (월) 14:00 ~ 15:00	장 소	안양대학교 회의실
참석인원	김동환(위원장), 홍상기(학교), 이원규(학교) 윤상호(학생), 조혜인(학생), 이은진(학생) 홍영삼(간사)	불참자	박광석(전문가)- 위임
안 건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른 기획예산과 (가)예산 심의 건		
내 용	-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따른 2012년도 예산 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등록금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 위원장 김동환 학생처장이 2012학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등록금 책정에 따른 개회를 선언 함. - 위원장 요청에 따라 기획처장 홍상기 위원이 2012학년도(가)예산안 설명 - 윤상호 학생대표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은 정부정책과 더불어 그 동안 인상된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적절한 수준에서 등록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장학금 확충과 더불어 모든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인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함. - 조혜인 학생대표 위원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은 학교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 방향, 학생들의 자구 노력 등으로 학교 구성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학우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이원규 위원이 2012년도 등록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강조 - 학생대표 이은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 윤상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조혜인 위원의 의견처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협의를 통해 학우들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가 산출될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 제시. - 학생대표 윤상호 총학생회장이 이은진 위원의 동의에 제청하고, (가)예산안의 철저한 분석과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 - 나머지 의원 동의 제청 함. - 추후 회의를 재차 개최하기로 하고 김동환 위원장이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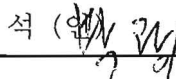
위의 사실을 확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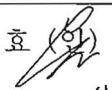
2012년 01월 09일

위원장 : 김 동 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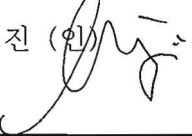
위 원 : 홍 상 기 (인) 

위 원 : 이 원 규 (인) 

위 원 : 박 광 석 (인) 

위 원 : 윤 상 호 (인) 

위 원 : 조 혜 인 (인) 

위 원 : 이 은 진 (인) 

응답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2011년 7월 19일(화) 15:00 ~ 16:45	장소	안양대학교 회의실
참석인원	한성기(위원장), 이성훈(학교), 이원규(학교), 안치범(동문), 도성민(학생), 김민지(학생), 홍영삼(간사)		
안건	정부의 응물금 인하정책에 따른 응물금 인하 방안 심의 건		

내 용

- 최근 이수가 되고 있는 반값 응물금에 따른 우리 대학의 입장과 인하 가능한 요소를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
- 위원장 한성기 학생처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수가 되는 반값 응물금에 대한 우리 대학의 입장과 인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회의개회 선언
- 위원장 요청에 따라 기획처장 이성훈 위원장이 2011학년도 2.9% 인상된 응물금 인
- 2011학년도 2학기 응물금 인하 방침에 대한 논의 중 학생대표 도성민, 위원(홍학성 회장) 이 응물금 인하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기조생활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그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과 함께, 전 학우가 동일한 금액으로 응물금 인하 혜택을 받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함
- 동문대표 안치범 위원이 2011학년도 2학기 응물금의 인하 보다는 장학금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방안이 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작용될 것 이라는 의견 제시
- 이원규 위원이 2011년도 응물금 인상률은 2.9%였으나 입학금 인상은 5.9%로 응물금 인상을 보다 상회 하므로 응물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차액을 환를 하는 방안을 제시
- 학생대표 김민지 대의원 의장이 홍학성 회장과 도성민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홍학처장 이원규 위원장 의견처럼 입학금 인상률을 응물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 고 차액에 대하여는 환를 조치할 것을 제청 함
- 동문대표 안치범 위원이 이원규 위원이 제시한 안이 학교 실정과 학생들의 입장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방안임을 다시 한 번 동의하고, 이성훈 기획처장, 도성민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입학금 인상률 응물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 고 그 차액은 환를하기로 심의 함
- 환률에 대한 절차와 명부는 기획예산과, 재무과에서 담당하기로 함
- 한성기 위원장이 폐회선언.

위의 사항을 확인 함.

2011년 7월 19일

위원장 :

한성기 (인)

위원 :

이성훈 (인)

위원 :

이원규 (인)

위원 :

김민지 (인)

위원 :

도성민 (인)

위원 :

안치범 (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1년 1월 31일 14:00	장 소	안양대학교 회의실
참석인원	한성기(위원장), 이성훈(학교), 이원규(학교) 안치범(동문), 박현욱(전문가), 도성민(학생), 김민지(학생), 홍영삼(간사)	불참자	없음

안 건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심의
-----	-----------------------

내 용	- 201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채청에 따른 심의 - 위원장 한성기 학생처장의 201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인상에 따른 심의 회의개회 선언과 함께 기획예산과에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 배경 설명 요청 - 위원장 요청에 따라 기획처장 이성훈 위원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와 인상률에 대한 배경 설명. - 학생대표인 도성민 총학생회 회장이 더 이상 긴축 예산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초 예산안(4.5% 이상안) 보다 1.5% 긴축된 3.00% 인상된 예산안으로, 더 이상의 긴축예산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 동문대표 안치범 위원과 전문가 위원인 박현욱 세무사가 3.00%는 현실적으로 평균 물가 인상률 3.40%를 밑도는 프로테지라는 설명과 학교측에서 제시한 3.00% 인상률은 합당한 인상률이라는 의견 제시 - 학생대표 김민지 대의원 의장이 3.00% 인상은 학생측에서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인상률이라는 의견과 총학생회장의 동의에 따라, 이원규 총무처장이 학생대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족할 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박현욱 전문가 위원이 2.90% 인상률을 제안하고, 동문대표인 안치범위원이 동의, 이원규 총무처장의 제청과 학생대표와 기획처의 수용에 의해 2011학년도 신·편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2010학년도 등록금 대비 3.00% 인상된 당초 예산안에서 2.90% 인상된 예산안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심의를 마침. - 한성기 위원장이 폐회선언.
-----	--

위의 사실을 확인 함.

2011년 1월 31일

위원장 :	한 성 기 (인)		
위 원 :	이 성 훈 (인)	위 원 :	박 현 욱 (인)
위 원 :	이 원 규 (인)	위 원 :	도 성 민 (인)
위 원 :	안 치 범 (인)	위 원 :	김 민 지 (인)

안양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해당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고, 학생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교직원(당연직 위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가능) 3인, 학생 2인, 관련 전문가 1인, 동문 1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학부모 또는 동문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생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다음 연도 등록금 책정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학교별 임원 구성 현황

◆ 문의처 및 제출 방법

* 흰색 셀에만 값 및 내역 입력

* 문 의 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재정통계팀 ☎ 02-3479-2556~8

* 제출방법 : 2월 16일(수)까지 이메일(kfpp02@sahak.or.kr)로 송부

* 본 입력양식은 총 3장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sheet 입력 요망

학교명	교직원 위원	학생 위원	전문가 위원	학부모 위원	동문 위원	기타
안양대학교	3	2	1	0	1	0

* 위원 성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만 기재 (예 : 홍○○)

순서	이름	위원 구분	현직	추천인자 및 선임근거	비고
1	한○○	교직원	학생처장	총장 및 학교 추천	
2	이○○	교직원	기획처장	총장 및 학교 추천	
3	이○○	교직원	법인사무국장	총장 및 학교 추천	
4	도○○	학생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및 학생추천	
5	김○○	학생	대의원장	학생처장 및 학생추천	
6	박○○	전문가	세무사	총장 및 학교 추천	
7	안○○	동문	총동문회 임원	총장 및 학교 추천	
8					
9					
10					
11					
12					
13					
14					
15					

